

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

[]제안서
[]변경 제안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
제안자	기관명(법인명)		
	대 표 자		
	주 소		
복합지구 개요	지 구 명		
	위 치		
	복합사업 유형		
	면 적		
	용도 지역		
	계획 인구 및 세대수		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0조의7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4항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(변경지정)을 제안합니다.

년 월 일

제안자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(시·도지사) 귀하

첨부 서류	1. 지정제안의 경우 가. 주택 수요, 지역 여건 등 복합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서류 나.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다. 복합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라.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와 현황 사진 마. 토지이용,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적은 서류 바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과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합니다)를 적은 서류(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) 사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0조의7제6항 후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한 사항을 적은 서류 아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)	수수료 없음
	2. 변경제안의 경우: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	

처 리 절 차

이 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